

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과  
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전부개정조례안

(이인순 의원 대표발의)



**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**

#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(이인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4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년 9월 30일

발의자 : 강수진, 권영애, 김경이, 김육영,  
소형준, 오중균, 이용진, 이인순,  
이일준, 이호건, 임태근, 임현주,  
정기혁, 정병기, 진선아

## 1. 제안이유

여성폭력의 범위를 가정폭력, 성폭력, 성매매 외에 성희롱,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까지 확대 규정한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의 책무 (안 제3조)
- 나. 협력체계 구축 (안 제4조)
- 다. 시행계획 수립·시행 (안 제5조)
- 라. 실태조사 (안 제6조)
- 마. 여성폭력 예방교육 (안 제7조)

바. 관련정보의 제공 (안 제8조)

사. 비밀 준수 의무 (안 제9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사전협의 : 여성가족과

라. 입법예고 : 2024. 10. 10. ~ 2024. 10. 16.

##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,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다.

제3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

및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

제4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

· 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, 의료기관, 교육기관,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5조(시행계획 수립·시행)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

및 피해자 보호·지원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.)을 수립하며,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
2. 여성폭력 피해 현황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

3.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
가.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
나. 여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

다.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

라.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

마. 여성폭력 추방 주간 운영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실태조사)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

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

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여성폭력 예방교육)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 및 방지와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제8조(관련정보의 제공)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비밀 준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피해자 정보 등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